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87호 2024. 5. 9.(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709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3
- 사천시 공고 제2024-710호 2024/2025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18
- 사천시 공고 제2024-717호 2023년 평화1, 대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21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제887호

사천시 고시 제2024-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5. 9.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점용ㆍ사용 등	승인을 받은 자	점용ㆍ사용 승(공사내용	공사	점용·사용 실시계획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인공구조물 설치)	예정기간	신고수리번호 (연월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건설과장)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7-5번지선	385 (직접)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별학도) - 산책로 조성(데크설치)	2024. 5. ~ 2024. 12	2024-5 (2024. 5. 3.)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210번지선	600.4 (직접)	하봉항 물양장 확장 공사	2023. 7. ~ 2024. 6. 12.	[변경승인] 2024-6 (2024. 5. 7.)
시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379-11번지선	전체: 1,530 직접: 973 간접: 557	금문항 선착장 확장 및 부잔교 설치	2024. 5. ~ 2024. 10.	2024-7 (2024. 5. 7.)

제887호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m²)	용도지역	비 고
도시개발사업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시 용현면 일원	6,221,383.4	농림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등	

2. 제한사유

○ 『도시개발사업(우주항공복합도시)』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3. 제한내용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가설건축물 건축
- O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4. 제한기간

O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 까지로 함.

5.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O 게재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 및 우주항공과(☎ 055-831-3496)에 비치 열람 가능함.

제887호

사천시 공고 제2024-709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칙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정보 차량 내부 게시 사항 신설 등(안 제27조의2, 제29조)

나.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29조)

제887호

- 다. 차량 교체 기준 변경(안 별표 1)
- 라. 차량정수번호 부여 방법 예시란 수정(경남→사천)(안 별표 2)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22,

FAX: 831-6028)

사 천 시 궁 보

제887호

입 법 예	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제887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3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된다"를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 ① 총괄부서는 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총괄하여 가입하고,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보유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7호

- 2.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u>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u>(제4조 관련)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승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 본청 ·시 의회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의전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 본청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미만)	·단위부서	월도구터 '출품된다법」세10소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단위부서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다목적형승용차	·단위부서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단위부서	
승합용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o ii o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단위부서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대형은 제외)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단위부서	
화물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단위부서	·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청소차	·단위부서	
	구급차	·단위부서	
	분뇨차	·단위부서	
투수용	진료차	•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이동수리차	·단위부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트럭트렉타	·단위부서	
	트레일러	·단위부서	
	렉카차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승용차다목적형승용차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중형승합차소형승합차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중형화물차소형화물차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블런스 · 교통약자 · 산불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방역 · 가축방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의 특수차	123456789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용차량 현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승용	용(전용	· · 의전	선용)	2	응용(업	무용)		승합용					특수용			
총계	소계	대형	중형	· 경 및 다 적 형	소계	대형	중	소 · 경형 및 다목 적형	소계	대형	중형	· 경 및 다 적 행	소계	대형	중형	소 · 경 및 다목 적형	소계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승용	(전용	· 의전	년용)	2)	승합용					특수용					
구분	총계	소계	대형	중형	소 경 및 다목 적형	소계	대형	중형	· 경 및 다목 적 형	소계	대형	중형	· 경 및 다목 적 형	소계	대형	중형	소 경 및 다목 적형	소계
합계																		
구입																		
임차																		

3. 공용차량 구입(임차) 및 처분 현황

		승용	(전용	· 의전	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특수용			
구분	총계	소계	대형	중형	소 경 및 다목 저 적	소계	대형	중형	소 경 및 다목 다적	소계	대형	중형	소 [·] 경형 및 다목 적	소계	대형	중형	소 [·] 경 및 다목 적	소계
구입																		
임차																		
처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시</u> 에서 관	제1조(목적) <u>사천시</u>
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시</u> 각	제3조(적용범위) <u>사천시</u>
단위부서에서 관리 · 운행하는	(이하 "시"라 한다)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5조(전용차량의 용도변경) <u>시장</u>	제5조(전용차량의 용도변경) <u>사천</u>
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	
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	
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차량 관리방법) ①・②	제22조(차량 관리방법)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3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 <u>된다</u> . <u><단</u>	되며, 공무
<u>서 신설></u>	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
	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신 설>

제29조(지도·점검 등) ① (생 제29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u><신 설></u>

2. • 3. (생략)

<신 <u>설></u>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 기검사) ① 총괄부서는 시 공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 에 따른 의무보험을 총괄하여 가입하고,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 리법 | 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야 하다.

- ② 단위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보 유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 다.
- 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
<u>다.</u>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차량교체기준**(제4조 관련)

용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교체기준			
	n=1 & 0 -1	• 시장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의회의장 ・부시장	· 최단운행연한이 · 차량의 최초 등록			
승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 본청 ·시 의회	의부터 7년을 경과 하고 최단주행거리1			
(의전 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2만km를 초과한 경우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 본청	카디 () 페셔 쥐시			
승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업무 용)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미만)	·단위부서	또는 최단주행거리 1 2만km를 초과한 경우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 단위부서	(이 경우 최단운행연 한이 7년 이상)			
	다목적형승용차	• 단위부서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 경과			
승합용	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요 점 유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 단위부서	사당의 최조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 한이 7년 이상)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단위부서				
화물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 2만km를 초과한 경우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단위부서	2년대를 소객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 한이 7년 이상)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청소차	·단위부서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단위부서				
E & ^	진료차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특수용	이동수리차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 경과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 단위부서	2, 1, 12 31			
	트데일더 렉카차	· 단위부서 · 단위부서				
			1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장 · 시의회의장 · 부시장 · 시 본청 · 시 의회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승 용 (의전 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시 본청 · 시 의회	장이 정하는 내용연 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 본청	• 최단운행연한: 차량들			
승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조달			
(업무 용)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미만)	• 단위부서	장이 정하는 내용연~ 에 해당하는 기간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 단위부서	• 최단주행거리:			
	다목적형승용차	• 단위부서	12만km이상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 단위부서	• • 최단운행연한: 차량: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단위부서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조달			
승합용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 단위부서	장이 정하는 내용연* 에 해당하는 기간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대형은 제외)			
	대형화물차(최대적재 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			
화물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 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 단위부서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조달 장이 정하는 내용연의			
	소형화물차(최대적재 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 단위부서	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이상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IS CIM 10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랙타	 단위부서 단위부서 단위부서 단위부서 단위부서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 신규등록한 날로부 「물품관리법」제16조 2제1항에 따라 조달			
	트레일러 렉카차 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	장이 정하는 내용연= 에 해당하는 기간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승용차다목적형승용차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숭합용차량	대형승합차중형승합차소형승합차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중형화물차소형화물차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블런스 · 교통약자 · 안봉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항병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에 특수차	1 2 3 4 5 6 7 8 9 9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승용차다목적형승용차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중형승합차소형승합차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중형화물차소형화물차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앰블런스 교통약자 산불생분무 이동욕 방역 가축기계수리 그 밖의 특수차 	라 1 라 2 라 4 5 라 6 6 7 라 라 9 라 10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 런 법 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 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 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87호

사천시 공고 제2024-710호

2024/2025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2024/2025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u>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 시 해양수산과로 제출</u>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사 천 시 장

- 1. 2024/202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아래 참조
- 2. 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3. 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서 접수처: 사천시 해양수산과
- 4. 신청자격: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5. 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시 구비서류
 - 가.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및 양식업 허가증 사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여권사본 등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9, 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87호

Ⅰ. 승인조건(공통)

- 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 그 조건 이행 후 면허 처분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수면은 양식업면허를 처분할 수 없다.
-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경우는 그 민원 및 수산 관련 분쟁을 해소한 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라.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마. 대체개발 시 합산·분할 어장의 어업권자 동의 완료한 후 양식업면허를 처분 하여야 한다.
- 바. 양식장 개발 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청소 완료를 확인 한 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사. 양식장 개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면허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장은 재해대책 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아.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자.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 협동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 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 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카. 양식업면허 처분 시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타. 위(가~카)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2024/2025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 수하여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궁 보

제887호

Ⅱ. 세부**내역**

□ 재개발(양식업)

순번	시군	면허 번호	어업의 명 칭	양식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현어장 면적(ha)	재개발 면적(ha)	승인결과
소계	4건						21.4	21.4	승인 3건 조건부 승인 1건
1	사천시	사천 제25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꼬막	서포면 다평리	10.0	10.0	승인
2	사천시	사천 제26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서포면 비토리	9.0	9.0	승인
3	사천시	사천 제24호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가두리식)	어류	서포면 비토리	0.5	0.5	조건부 승인 (마을어장과 중첩 면적 해소방안 마 련 후 면허처분)
4	사천시	사천 제28호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가두리식)	어류	서포면 비토리	1.9	1.9	승인

제887호

사천시 공고 제2024-717호

2023년 평화1, 대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평화1, 대곡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사 천 시 장

- 1. 사 업 명: 2023년 평화1, 대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가. 평화1지구: 46필지, 8,584.8㎡
 - 나. 대곡1지구: 22필지, 10,989.5㎡
- 4. 지적확정조서: 붙임문서 참조
-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 6. 공람장소: 사천시 토지관리과
-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8. 문의처: 사천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3)

					Ţ	평화1	지즈	덕재.	조사	지구	확정	조서			
번호		乭	등전 토기	ا۲			호	학정 토	지		면적	증감		소유자	비고
민호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증가 (m²)	감소 (m²)	성명	주소	- 1177
1	사천 읍	평화 리	177 -1	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1	대	171.9	6.9	0.0	박*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길 **	
2	사천 읍	평화 리	177 -4	작 종 지	289.0	사천 읍	평화 리	177 -4	작 종 지	280.7	0.0	8.3	대표 미지정(2 명)		
3	사천 읍	평화 리	177 -7	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7	대	173.5	8.5	0.0	강*숙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4	사천 읍	평화 리	177 -8	대	188.0	사천 읍	평화 리	177 -8	대	189.7	1.7	0.0	구*영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5	사천 읍	평화 리	177 -10	작 종 지	36.0	사천 읍	평화 리	177 -10	작 종 지	36.0	0.0	0.0	대표 미지정(2 명)		
6	사천 읍	평화 리	177 -11	대	314.0	사천 읍	평화 리	177 -11	대	328.6	14.6	0.0	제*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길 **-**	
7	사천 읍	평화 리	177 -12	잡終고	165.0	사천 읍	화 평 ^긴	177 -12	잘 종 지	168.7	3.7	0.0	김*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8	사천 읍	평화 리	177 -13	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13	대	171.1	6.1	0.0	강*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9	사천 읍	평화 리	177 -14	잘종지	383.0	사천 읍	평화 리	177 -14	작 종 지	382.7	0.0	0.3	대표 미지정(2 명)		
10	사천 읍	평화 리	177 -15	잡終고	165.0	사천 읍	화 평 ^긴	177 -15	잘 종 지	161.0	0.0	4.0	구*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11	사천 읍	평화 리	177 -16	픕	165.0	사천 읍	화 평 ^긴	177 -16	대	175.7	10.7	0.0	오*재	***-*	
12	사천 읍	평화 리	177 -17	잡용지	165.0	사천 읍	화 평 긴	177 -17	잘 종 지	165.0	0.0	0.0	박*홍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동 ****호	
13	사천 읍	평화 리	177 -18	작 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18	작 종 지	170.2	5.2	0.0	대표 미지정(2 명)		
14	사천 읍	평화 리	177 -19	작 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19	작 종 지	166.1	1.1	0.0	백*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15	사천 읍	평화 리	177 -20	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0	대	171.9	6.9	0.0	임*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16	사천 읍	평화 리	177 -21	작 종 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1	잡 종 지	173.3	8.3	0.0	대표 미지정(2 명)		
17	사천 읍	평화 리	177 -22	작 종 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2	잡 종 지	168.1	3.1	0.0	강*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로 ***,	
18	사천 읍	평화 리	177 -23	잡총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3	장 종 지	173.2	8.2	0.0	백*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길 **	
19	사천 읍	평화 리	177 -24	급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4	대	153.6	0.0	11.4	차*진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영길 *-*	
20	사천 읍	평화 리	177 -25	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5	대	165.0	0.0	0.0	김*순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평거동. 평거휴먼시아*단지)	

ш±		 종	등전 토기	ا7			호	라정 토 ²	지		면적	증감		소유자	비고
번호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증가 (m²)	감소 (m²)	성명	주소	
21	사천 읍	평화 리	177 -26	잡 종 지	165.0	사천 읍	평화 리	177 -26	잡 종 지	171.8	6.8	0.0	장*경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동 ****호 (이현동, 이현하이클래스웰가)	
22	사천 읍	평화 리	177 -27	대	172.0	사천 읍	평화 리	177 -27	대	175.6	3.6	0.0	문*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길 **	
23	사천 읍	평화 리	177 -28	잘 종 지	43.0	사천 읍	평화 리	177 -28	장 종 지	43.0	0.0	0.0	대표 미지정(2 명)		
24	사천 읍	평화 리	177 -31	구 거	15.0	사천 읍	평화 리	177 -31	굿거	22.9	7.9	0.0	국(농림 축산식 품부)		
25	사천 읍	평화 리	178 -1	답	147.0	사천 읍	평화 리	178 -1	답	173.2	26.2	0.0	정*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26	사천 읍	평화 리	178 -2	대	110.0	사천 읍	평화 리	178 -2	대	110.0	0.0	0.0	대표 미지정(1 4명)		
27	사천 읍	평화 리	178 -5	대	272.0	사천 읍	평화 리	178 -5	대	243.5	0.0	28.5	정*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28	사천 읍	평화 리	178 -6	대	287.0	사천 읍	평화 리	178 -6	대	297.5	10.5	0.0	강*갑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29	사천 읍	평화 리	178 -7	답	135.0	-	-	-	-	말소	0.0	135. 0	대표 미지정(5 명)		
30	사천 읍	평화 리	178 -8	대	166.0	사천 읍	평화 리	178 -8	대	169.7	3.7	0.0	구*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 ***호	
31	사천 읍	평화 리	178 -9	대	143.0	사천 읍	평화 리	178 -9	대	145.7	2.7	0.0	김*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	
32	사천 읍	평화 리	178 -10	대	143.0	사천 읍	평화 리	178 -10	대	147.9	4.9	0.0	김*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33	사천 읍	평화 리	178 -11	대	153.0	사천 읍	평화 리	178 -11	대	172.6	19.6	0.0	박*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	
34	사천 읍	평화 리	178 -12	대	534.0	사천 읍	평화 리	178 -12	대	534.0	0.0	0.0	대표 미지정(1 4명)		
35	사천 읍	평화 리	178 -15	도로	55.0	사천 읍	평화 리	178 -15	도로	55.0	0.0	0.0	합***** 사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 ***-*	
36	사천 읍	평화 리	178 -16	도로	70.0	사천 읍	평화 리	178 -16	도로	70.0	0.0	0.0	최*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 ***동 ***호	
37	사천 읍	평화 리	178 -17	대	271.0	사천 읍	평화 리	178 -17	대	271.0	0.0	0.0	대표 미지정(3 명)		
38	사천 읍	평화 리	178 -18	대	329.0	사천 읍	평화 리	178 -18	대	329.0	0.0	0.0	대표 미지정(3 명)		
								194 -7	구 거	1,164.7					
39	사천 읍	평화 리	194 -7	구 거	1,279.0	사천 읍	평화 리	194 -9	구거	30.2	53.4	0.0	국(농림 축산식 품부)		
								194 -10	굿	137.5			ŕ		
40	사천 읍	평화 리	194 -8	구 거	147.0	사천 읍	평화 리	194 -8	구 거	147.3	0.3	0.0	국(농림 축산식 품부)		

번호		종	5전 토기	۲		확정 토지						증감	소유자	비고	
I 인호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면적 (m²)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증가 (m²)	감소 (m²)	성명	주소	
41	정동 면	고읍	438 -32	답	13.0	정동 면	고읍 리	438 -32	답	13.0	0.0		대표 미지정(2 명)		
42	정동 면	고읍	438 -33	답	30.0	정동 면	고읍 리	438 -33	답	30.0	0.0	0.0	대표 미지정(2 명)		
43	정동 면	고읍	438 -34	답	63.0	정동 면	고읍 리	438 -34	답	63.0	0.0	0.0	대표 미지정(2 명)		
44	정동 면	고읍	438 -89	구거	97.0	정동 면	고읍 리	438 -89	구거	44.1	0.0	52.9	국(농림 축산식 품부)		
45	정동 면	고읍	438 -90	굿거	86.0	정동 면	고읍 리	438 -90	구 거	76.6	0.0	9.4	국(농림 축산식 품부)		

					다	곡1	지적	재조	드사기	지구 확	정조	서			
ш÷		Ę	종전 토	.지			٤	확정 토	.지		면적	증감		소유자	ul ¬
번호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증가 (m²)	감소 (m²)	성명	주소	- 비고
1	정동 면	대곡 리	171	대	1,036.0	정동 면	대곡 리	171	대	1,087.3	51.3	0.0	강*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	정동 면	대곡 리	171 -2	대	12.0	-	-	-	-	말소	0.0	12.0	강*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3	정동 면	대곡 리	178 -3	도로	7.0	-	-	-	-	말소	0.0	7.0	최*진		
4	정동 면	대곡 리	178 -4	도로	10.0	-	-	-	-	말소	0.0	10.0	최*진		
5	정동 면	대곡 리	178 -5	전	29.0	-	-	-	-	말소	0.0	29.0	강*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6	정동 면	대곡 리	179 -2	도로	20.0	-	-	-	-	말소	0.0	20.0	최*진		
7	정동 면	대곡 리	179 -3	전	35.0	-	-	-	-	말소	0.0	35.0	강*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180 -2	구거	3.0										
8	정동 면	대곡 리	200 -6	구거	161.0	정동 면	대곡 리	200 -6	구 거	346.2	175.2	0.0	한국 농장 산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489 -1	구거	7.0								·		
9	정동 면	대곡 리	180 -3	도로	129.0	-	-	-	-	말소	0.0	129.0	최*진		
	정동	대고	180 -4	대	377.0	정동	대고	180	_,,				-1	경상남도 사천시	
10	정동 면	대곡	181	대	192.0	정동 면	대곡 리	-4	대	562.9	0.0	6.1	최*식	정동면 한실 <u>안길</u> **-*	
11	정동 면	대곡	180 -5	대	10.0	-	-	-	-	말소	0.0	10.0	최*진		
12	정동 면	대곡 리	180 -6	대	455.0	정동 면	대곡 리	180 -6	대	482.3	27.3	0.0	허*중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13	정동 면	대곡 리	180 -7	대	553.0	정동 면	대곡 리	180 -7	대	660.4	107.4	0.0	황*연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14	정동 면	대곡 리	180 -8	대	67.0	-	-	-	-	말소	0.0	67.0	강*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15	정동 면	대곡	182	대	129.0	정동 면	대곡 리	182	대	129.0	0.0	0.0	백*연	경상남도 사처시 정동면 한실안길 **-*	
16	정동 면	대곡	183	대	377.0	정동 면	대곡 리	183	대	466.1	89.1	0.0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17	정동 면	대곡 리	184	대	664.0	정동 면	대곡 리	184	대	664.0	0.0	0.0	박*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18	정동 면	대곡 리	185	대	390.0	정동 면	대곡 리	185	대	425.1	35.1	0.0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шт		=	종전 토	지			Ę	확정 토	지		면적	증감		소유자	비고
번호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증가 (m²)	감소 (m²)	성명	주소	
19	정동 면	대곡 리	186	대	397.0	정동 면	대곡 리	186	대	163.2	0.0	233.8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0	정동 면	대곡 리	187	대	493.0	정동 면	대곡 리	187	대	538.4	45.4	0.0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1	정동 면	대곡 리	188	전	1,094.0	정동 면	대곡 리	188	전	457.9	0.0	636.1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2	정동 면	대곡 리	189	전	684.0	정동 면	대곡 리	189	전	930.7	246.7	0.0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3	정동 면	대곡 리	196	전	202.0	정동 면	대곡 리	196	전	550.5	348.5	0.0	박*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정동	대곡	198 -2	대	354.0	정동	대곡	198	- 11				71.5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24	정동 면	대곡 리	200 -1	대	253.0	정동 면	<u> </u>	-2	대	498.5	0.0	108.5	김*덕	정농면 한실안길 **-**	
25	정동 면	대곡	199	대	499.0	정동 면	대곡 리	199	대	525.5	26.5	0.0	대표 미지 정(2 명)		
26	정동 면	대곡 리	200 -3	대	299.0	정동 면	대곡 리	200 -3	대	457.0	158.0	0.0	최*경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7	정동 면	대곡 리	200 -4	대	561.0	정동 면	대곡 리	200 -4	대	567.1	6.1	0.0	임*의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객방길 **	
28	정동 면	대곡 리	200 -5	대	249.0	정동 면	대곡 리	200 -5	대	241.4	0.0	7.6	백*연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29	정동 면	대곡 리	201 -1	도로	66.0	-	-	-	-	말소	0.0	66.0	국 어 종 산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30	정동	대곡	202	답	361.0	정동	대곡	200		450.0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30	정동 면	대곡 리	203 -1	답	194.0	정동 면	대곡	202	답	450.9	0.0	104.1	박*윤	성동면 안질안길 **-**	
31	정동 면	대곡	202 -2	답	36.0	-	-	-	-	말소	0.0	36.0	최*경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한실안길 **-**	
32	정동 면	대곡 리	203 -3	도로	73.0	-	-	-	-	말소	0.0	73.0	최*진		
	정동	대곡	686	도	450.0	정동	대곡	686 -2	도로	227.4	000.1	0.0	국(국 토교		
33	정동 면	대곡리	-2	도 로	453.0	정동 면	"ä [*]	686 -3	도로	557.7	332.1	0.0	토교 통부)		